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가광물정보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

■ 이철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438호)

2024. 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국가광물정보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2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 위탁 근거 마련 등	6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철규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 2024. 6. 13.
3. 회부연월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중요 광물자원의 탐사 시 확보된 암추(岩錐, 시추장비를 이용해 땅속에 구멍을 뚫어 채취한 원기둥 모양의 암석으로 해당 지역의 지질 구조, 암석 분포 등에 관한 핵심 정보를 담고 있는 암석 샘플을 말함)를 보관·관리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국가광물자원정보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음

그러나 국가광물자원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암추를 보관·관리하거나 이를 이용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가광물자원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관련 법적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광물자원의 탐사 시 확보된 암추(岩錐) 등 지질·광물 정보의 보관·관리 및 관련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광물자원의 효율적인 탐사·개발 및 이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2 신설 및 제96조).

Ⅲ. 검토의견

1. 국가광물정보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개정안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광물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2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86조의2(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요 광물자원의 탐사 시 확보된 암추(岩錐) 등 지질·광물 정보를 수집·보관·관리하고 이를 분석·가공하여 정보이용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광물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③ 그 밖에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광물자원 탐사 시 확보된 암추¹⁾를 보관·관리하고, 이를 분석·가공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국가광물정보센터를 설치·운영²⁾하고 있음.

[국가광물정보센터 개요]

○ (설립목적) 보관시설 부족으로 사장(死藏)되고 있는 시추암추 등 중요 지질·광물탐사자료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수집, 보관 및 활용							
○ (설립주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설립('16년)							
○ (운영방식) 위수탁계약(산업통상자원부-한국광해광업공단)에 의거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운영 중							
* 국가광물정보센터의 법적 근거가 없어 위수탁계약('15.2월)에 의거, 위임사무 수행 중							
○ (소재지)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탐골길 100번지							
○ (사업내용) 전국에 사장되는 암추를 보관하고, 지질정보를 추출·분석하여 광업계 및 대국민에 지하지질정보 제공							
○ (암추보관실적)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누계
보관 계획(m)	84,740	25,000	25,000	25,000	22,500	22,500	204,740
보관 실적(m)	91,333	27,120	27,804	25,715	22,947	23,121	218,04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1) 암추(岩錐)는 시추장비를 사용하여 땅 속에 구멍을 뚫어 채취한 원기둥 모양의 암석 샘플로, 탐사 지역의 지질구조와 암석분포 등의 정보를 담고 있음.
- 2) 국가광물정보센터는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위탁 운영해 왔으나, 2021년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통합된 후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음.

현재 국가광물정보센터는 암추보관, 지질·광물정보 추출·분석, 지질·광물정보 DB구축·관리, 암추를 활용한 대학 현장실습교육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호주 등도 법적 근거를 토대로 국가광물정보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국가광물정보센터 해외 사례]

□ 미국

- 기관명 : CRC(Core Research Center)
- 주요기능
 - 미국 내 석유 및 광업회사, 주립지질조사 관련의 시추 암추 통합 관리
 - 암추, 박편, 사진, 분석자료의 보관 및 DB화
 - 전세계 지질정보의 수집 및 제공
- 법적근거 : National Geological and Geophysical Data Preservation Program
 - 지질자료에 대한 국가적 자료 관리를 목적으로 2005년 제정

□ 영국

- 기관명 : NGR(The National Geological Repository)
- 주요기능
 - 시추 암추 등 지질자료의 보관 및 DB화
 - 고해상도 암추이미지 및 소장자료 제공
- 법적근거 : 광업법(Mining Industry Act 1926)
 - 사업자가 시추암추 등의 지질자료 취득 시에 국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 호주

- 기관명 : PCL(Perth Core Library)
- 주요기능
 - 서호주주에서 발생하는 암추의 보관 및 DB화
 - 보관 중인 암추 및 지질정보에 대한 자료 제공
- 법적근거 : 광업법(Mining Act 1978), 광업규칙(Mining Reg. 1981) 등
 - 광업법에 따라 주지사는 광업권자에게 암추 보관 명령 가능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운영, 업무 위탁 및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탐사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축적된 지질·광물정보의 제공을 통한 광산개발 비용절감과 초기 개발 준비기간 단축, 연구개발 활용 촉진 등 광물자원의 체계적인 탐사·개발 및 이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 위탁 근거 마련 등

개정안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 위임 대상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고,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6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u>도지사</u>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u><신 설></u>	제9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 ----- ----- <u>특별자치시장·도지사</u> ----- ----- -----.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현행법은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권한의 위임대상에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별자치시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³⁾은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의 권한의 위임대상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으나 법 해석상 국민의 혼란이 있을 우려가 있음.

또한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 중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고 광업 관련 전문 기관·단체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가 있음에도,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 위임대상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법 해석상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57

3)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② (생략)

③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